

제안제도운영규정

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안 처리담당 부서장”을 “상임이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창안심사) ① 창안 및 그 등급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며, 위원장은 <u>제안 처리담당 부서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8조(창안심사) ① 창안 및 그 등급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며, 위원장은 <u>상임이사</u>로 한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